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84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차규근・신장식・강경숙

김재원 · 황운하 · 서왕진

박은정 • 이해민 • 김준형

김선민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허가내역과의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중 "물품에"를 "물품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	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
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	청과 협조) ①
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	
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	
·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1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	
품질 등을 위반한 <u>물품에</u> 관	<u>물품 및 중앙행</u>
한 정보	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
	한 물품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